
청소년상담심리학과

전공필수(구.대학정책) 현장실습 운영규정

I. 대학정책 현장실습의 의의

- 청소년상담심리학과 의 『현장실습』과목(이하 현장실습)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기술을 전공관련 진로분야의 현장에 적용하여 실천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관련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다.
- 현장실습은 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역량 내지는 적성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기회가 된다.
- 현장실습은 청소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준비교육 내지는 훈련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.

II. 운영규정

(실습시간)

-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32시간 이상의 청소년활동 관련 자원봉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

(실습기관)

-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：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 청소년야영장, 유스호스텔
-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：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치료재활센터, 청소년회복지원시설
- 기타 청소년관련 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：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진로교육지원센터, 진로직업체험센터, 기타 학과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나 유관기관

(실습기간)

-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기간(3학년 1학기에서 4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, 방학기간 포함)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.
- 수강신청한 학기에 규정시간수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4학년 2학기까지 자원봉사활동시간의 합계가 총 규정시간 이상이 되면 이수가 인정된다.

(이수방법 및 평가)

- 본교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, 지도교수 이름으로 개설된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한다.
- 평가는 P/N 절대평가(Pass/Non-pass)로 진행된다. 규정시간의 완수, 봉사활동의 유의미성, 현장실습일지의 충실성 등에 따라 평가된다.
- 수강신청학기에 규정시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Non-pass로 평가된다. 이 경우 규정시간을 모두 완료하는 학기에 다시 수강신청하여 Pass로 평가된다.

(봉사활동 및 시간 증빙자료 첨부)

- VMS, DOVOL, 1365 등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서 활동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하여 현장실습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.

III. 유의사항

- 현장실습으로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일지(첨부양식 참조)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. 현장실습일지는 날짜별로 작성하며,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관분석, 활동내용, 활동소감 등을 충실히 작성한다.
-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일지를 점검하여 일지 내용이 부실할 경우, 청소년활동을 위한 경험학습이론상의 반성적 성찰능력의 부족으로 간주하여 32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이 완료되었더라도 N(Non-pass)으로 평가할 수 있다.
- 현장실습일지 작성 부적격 사유로 N(Non-pass)으로 평가받은 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다시 작성하여 다음 학기 재수강 후 평가를 받는다.
- 위의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수강하는 현장실습 과목에 적용한다.